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청구자격에 관한 내규

제1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) ①「대학원 학칙 전문대학원 시행세칙(이하 '시행세칙'이라 함」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박사학위 및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박사학위 및 석·박사학위 통합과정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「시행세칙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마련된 도시대학원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자격시험 및 논문중간발표에 합격하여야 하며, 전문학술지 논문 투고실적이 있어야 한다.

③전문학술지 논문 투고실적에 대하여는 「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·박사 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 (이하 '논문 발표실적 내규'라 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(논문자격시험) ①논문자격시험은 논문개요발표를 대신한다.(2020.01.02.영문표기 삭제)

②논문자격시험은 지도교수가 선정한 5명(3명이상 전임교원, 1명 이상 외부위원이어야 함)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선정된 심사위원은 최종심까지 계속하여 심사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심사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 및 본교 비전임교원은 심사위 원장이 될 수 없다.

제3조(논문중간발표) ①논문중간발표를 하려는 학생은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「논문 발표실적 내규」(제2조제①항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②논문중간발표는 논문자격시험의 주제와 같아야 한다. 주제가 변경될 경우 논문자격 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다.

제4조(학위청구논문 발표) 「시행세칙」 제34조에 따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「논문 발표실적 내규」(제2조제②항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문학술지 게재논문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부칙(2015.04.27.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 시행하던 내규를 적용한다. 단 2015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2019. 12. 31.

도시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논문 발표실적 내규

제1조(실적 기준) ①박사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·외 전문(연구재단등재지 이상)학술지에 본인 논문(설계논문 포함)과 관련된 논문 투고 실적이 200% 이상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수 있다.(2019.04.01.개정)

-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적 200% 중 100% 이상은 본인 논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이어야 하며, 나머지 논문은 박사학위청구 논문과 주제, 연구방법론 등이 유사해야 한다.
- ③제1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: 100%
 - 2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: 70%
 - 3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: 50%
 - 4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일 때 : 30%
- ④논문게재 시 논문제출자의 소속은 본교(한양대학교)로 하여야 하고, 지도교수를 공동저자(교신저자)로 하며, 게재 논문은 박사학위 입학 후에 발표한 것이어야 한다.
- ⑤논문게재 시 최소 2편은 주저자여야 한다.(2015.04.27.신설) 단, 제8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국 제저명학술지, 국제학술지 중 SCOPUS 논문의 경우는 주저자인 논문 편 수를 1편 이상으로 한다. (2020.01.02.신설)
-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한양대학교 교내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70% 범위 내에서 1편을 실적으로 인정한다.
- ⑦제6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: 70%
 - 2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: 49%
 - 3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: 35%
 - 4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일 때 : 21%
- ⑧국제저명학술지(SCI/SCIE/SSCI/A&HCI) 논문은 300%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.(2020.01.02.신설)
- ⑨제8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0.01.02.신설)
 - 1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: 300%
 - 2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: 210%
 - 3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: 150%
 - 4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일 때 : 90%
- ⑩국제학술지 중 SCOPUS 논문은 200%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.(2020.01.02.신설)
- ⑪제10항에서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2020.01.02.신설)
 - 1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2인 일 때 : 200%
 - 2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: 140%
 - 3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: 100%
 - 4.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일 때 : 60%

제2조(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제출시기) ①박사과정 및 석·박사과정 학생은 논문중간발표 신청기한 이내에 100%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. 이 때 논문은 제1조의 기준을 따른다.

②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논문게재 200%(제2조1항의 실적 포함) 이상의 실적을 도시대

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 게재논문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(6월호,12월 발간호의 게재예정증명서 첨부)으로 제출할 수 있다.(2015.04.27.개정)

③국제저명학술지인 경우에는 온라인 게재와 게재예정증명도 인정한다. 이 경우 게재완료는 졸업 후 2 년으로 하며, 졸업 후에도 박사학위논문 청구자는 지도교수와 연대하여 게재 완료 결과를 도시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2015.04.27.신설)

제3조 ①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한다.(2019.04.01.신설)

부 칙(2015.04.27.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그 학생이 입학할 당시 시행하던 내규를 적용한다. 단 2015학년 후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칙(2019.04.01.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20.01.02.공포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 내규는 2020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단 2020학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 개정 내규에 따라 학위논문 청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2019. 12. 31.